#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9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 김소희·김상훈·김위상

성일종 • 유용원 • 최수진

우재준 · 김성원 · 김예지

박덕흠 · 김선교 · 김장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,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가 초·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

3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학교금융교육의 실시)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초・중등학교"라 한다)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초 · 중등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초·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·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30조의2(학교금융교육의 실시)    |
|       |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       |
|       |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     |
|       | 용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      |
|       |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「초       |
|       | •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      |
|       | 학교(이하"초・중등학교"라 한      |
|       | 다)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      |
|       |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       |
|       |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</u> |
|       |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     |
|       |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    |
|       |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국가교     |
|       | 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       |
|       | 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      |
|       | 금융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.       |
|       | ② 초・중등학교의 장은 연 2      |
|       | 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      |
|       | <u>야 한다.</u>          |
|       |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      |
|       | 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       |
|       |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     |
|       | 로 초・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      |

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<u>다.</u>

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 ·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